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
----------	------

발의연월일 : 2016. 8. 22.

발의자 : 윤재옥 · 이우현 · 이현승  
함진규 · 박덕흠 · 황영철  
강석호 · 홍철호 · 이철우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솝,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후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솝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

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조제3항제3호 자목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제9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條(적용의 배제) ① ~ ④ (생략)  <u>&lt;신 설&gt;</u></p>	<p>第3條(적용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2조제3항제3호자목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다만,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제9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